



# 월간 전협개구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 751-6601, FAX: 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난 11월 26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간담회겸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김범일 시장, 김대목 건설방재국장,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황재찬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식 도시공사사장, 권오수 건설산업과장 등 6명 그리고 우리시회에서는 조종수 회장을 비롯한 감사, 운영위원, 윤리위원 등 24명이 참석하였다.

인사말에서 조종수 회장은 지난 1년간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내년부터 시행될 국가산업단지·첨복단지조성공사 등 지역발주공사에도 지역건설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김범일 시장은 건설업이 주요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건설업의 제도약과 이를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건설업계도 지역내 물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지로 나가서 많이 수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대목 건설방재국장은 2010년도에도 지역에서 약 3조원의 공공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며 지역업체 최대 참여를 위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황재찬 건설관리본부장도 내년 지역에서 발주될 공사를 가능한 분할발주등을 통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윤성식 도시공사 사장은 내년도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도시공사가 25% 지분으로 참여확정되었으며 가능한 도시공사 참여 비중을 늘려 지역업체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지역건설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지역발주 국가공기업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건의



우리시회 조종수 회장은 지난 11월 25일 대구상의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09 하반기 대구 경제동향 보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최문찬 시의회의장과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등 지역소재 국가기관 지청장, 금융권, 상공위원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각 산업별 최근 동향보고에 이어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우리시회 조종수 회장은 국가공기업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최소한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해 대구시(도시공사 포함)가 발주한 5,298억원중 지역업체가 57%인 3,018억원 정도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으로 지역업체 수주비중이 해마다 증가추세인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국가 공기업은 지역에서 6,223억원을 발주하여 대구시발주 공사보다 많음에도 지역업체 수주비중은 1,217억원으로 20%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공기업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을 올리기 위해서는 분할발주 적극 실시 및 지역본부 자체 발주물량을 늘려 향후 시행될 국가산업단지, 첨복단지기반조성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대구도시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229억원 미만)등 지역업체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국가공기업 공사에 대구도시공사의 공동시행 비중 확대할 것도 동시에 건의하였다.

### 2008년도 대구지역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지역발주(전체)		대구시 발주 (도시공사 포함)		기타공공발주 (국가,국가공기업)		민간발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869	40,176	448	5,298	215	6,223	1,206	28,654
대구업체 수주액	1,089 (58%)	11,439 (28%)	389 (87%)	3,018 (57%)	136 (63%)	1,217 (20%)	564 (47%)	7,203 (25%)
타 지역업체 수주액	780 (42%)	28,737 (72%)	59 (13%)	2,280 (43%)	79 (37%)	5,006 (80%)	642 (53%)	21,451 (75%)

###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 기술자 일부 중복 인정

정부는 내년 2. 11부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등록을 추가신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 건설업 등록기준 일부 중복인정 (영 제16조)

-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일부 중복인정(제1항)
  - 자본금의 경우 既 보유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 보유업종이 둘이상인 경우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관련 일몰제 도입(영 제87조의2 제2항)
      - ↳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조치 하여야 함
  - 기술능력의 경우 既 보유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 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제3종에 한정)을 추가 등록시 공동활용가능한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추가 등록하는 경우의 중복인정규정(제1항)을 준용(제2항)

####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영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삭제)

- 과태료부과 통자·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 과태료 부과기준(제3항) 및 가중감경 관련규정(제4항)은 현행유지



〈2009년도 회원 친목행사, 오사카성에서〉

2009년도 회원친목행사를 회원사대표 및 동반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13일~15일까지 2박3일간 일본 오사카, 교토 등지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지 최신 건축물 견학 및 유적지 관람등을 하고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 2009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편성표

(2009. 11. 17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등급	2009 시평액	공사 배정 규모		지역 업체수 (전국)	해당 회사사
		토 목	건 축		
1	11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5 (168)	화성, 씨앤우방, 서한, 화성개발 동화주택
2	390억 ~1100억	390억 ~1100억	390억 ~600억	9 (297)	태왕, 에스디, 한라, 보선, 청구, 삼진, 보국, 빅스타, 인터블고
3	230억 ~390억	230억 ~390억	230억 ~390억	12 (431)	평산, 명신, 삼아, 동화, 유창, 청구개발, 흥일, 대덕, 미도, 동양, 반석, 송옥
4	160억 ~230억	160억 ~230억	160억 ~230억	15 (497)	국태, 흥성, 팔공, 서우, 신성, 대창, 도화, 영남, 세창, 신흥, 명가, 신고려, 성복, 선우, 대마
5	110억 ~160억	110억 ~160억	110억 ~160억	21 (902)	명국, 서광, 오상, 청진, 태백, 수성, 인터, 우인, 성도, 유진, 삼하, 대일, 벽산, 안신, 미래로, 서방, 우보, 내외, 어블림, 대광건설, 이수
6	76억 ~110억	76억 ~110억	76억 ~110억	25 (1450)	양문, 범진, 시그마, 동서, 흥원, 원영, 덕산, 에스엠, 건구, 예진, 신세계, 일원, 동우, 원양, 용봉, 문화, 엘포츠, 인산, 진덕, 현암, 대광토건, 인주, 한맥, 청풍, 자연과도시

### 2009년도 회원사 대표이사 건설경영 연수 실시



제3회 회원사 대표이사 건설경영연수가 지난 11월5일~6일간 충북 충주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우리사회에서 14명등 영·호남지역 회원사 대표이사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하도급공정거래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영남권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초청하여 하도급특별교육을 지난 11월 26일 부산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교육에 우리사회에서는 대표이사 등 임원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하도급특별교육 이수 업체는 앞으로 3년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별점 산정시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경우는 1점, 임원이 교육받은 경우는 0.5점을 감경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데 금년에는 특히 본인 수강여부 확인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내년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턴키설계심의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11.26)하여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기로 하였다.

### 《턴키 설계심의 부문 주요 개정내용》

- 전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 <영제10조의2>
  - 현행 기술·평가 심의위원 2원화 체계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단일화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구분	심의내용	구성
중앙위원회(정부)	정부의 턴키대상공사	위원 70인
지방위원회(지자체)	지자체의 턴키대상공사	위원 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특별위원회(국방부)	국방부의 턴키대상공사	위원 50인 (소속 공무원 1/2 포함)
설계자문위원회(발주청)	투자기관등의 턴키대상공사	위원 50인 (소속 직원 1/2 포함)

- 턴키 설계심의제도 비교표

구분	종 전	개 정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위원회 내 각 소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위원회 (중앙정부)</li> <li>- 지방위원회 (지자체)</li> <li>- 특별위원회 (국방부)</li> <li>- 설계자문위원회 (발주청)</li> </ul> </li> <li>○ 심의위원 인력풀 운영</li> <li>○ 소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위 자격, 20인 이내 선정</li> </ul> </li> <li>• 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투자기관 임직원, 연구원, 교수 중 40%내 10~15인 이내 선정</li> </ul> </li> </ul> </li> <li>○ 기술위원 공개, 평가위원 비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 내에 “<b>설계심의분과위원회</b>”(비상근) 신설</li> <li>○ 각 위원회내에 소위원회 구성</li> <li>○ 소수 전담위원으로 상설위원회 운영</li> <li>○ &lt;분과위원회&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 70인(중앙), 50인(지방, 특별, 발주청)</li> <li>- 구성 : 공무원, 발주청 소속직원 1/2포함</li> <li>-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기술직렬 공무원(4급이상), 기술사·건축사·박사 공무원(5급)</li> <li>•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박사 직원(2급이상)</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li> <li>• (대학) 교수</li> </ul> </li> </ul> </li> <li>○ &lt;소위원회 : 평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중 5인~40인 선정</li> </ul> </li> <li>○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 명단 즉시 공개</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공개</li> <li>○ 항목별 차등평가, 총점 3~5% 차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공개</li> <li>○ 항목별 차등평가, 총점 3~5% 차등평가</li> </ul>
위원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및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제척·기피·회피 신청제 도입</li> </ul>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평가 완료후 계약제도 따라 낙찰자 선정(국가계약법령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 동산의 부합과 부당이득청구

### 1. 사 례

건축주 甲은 건설업자 乙과 상가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업자 乙은 상가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자재를 丙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의 자력이 의심되어 철근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조건으로 철근자재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한다는 특약, 즉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였습니다. 결국 건설업자 乙은 상가신축 공사 도중 부도가 나게 되어 丙은 乙로부터는 철근자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丙은 건축주 甲에게 철근자재의 반환이나 철근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2. 철근자재의 반환요구 가능성

동산이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에 부착·합체되었고,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附合)’되었다고 하며, 이때 동산의 소유권은 부합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256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유보부 매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철근자재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는 공급된 철근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丙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된 철근은 이미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부착·합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민법상 신축건물에 ‘부합(附合)’된 것으로 철근만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부합된 신축건물의 소유자 甲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입된 철근은 신축건물에 부합되어 건축주 甲의 소유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丙은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이유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철근대금의 보상요구 가능성

민법 제261조에는 “부합(민법 제256조)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에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건축주 甲이 시공업자 乙과 철근업체 丙 간에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철근업자 丙은 건축주 甲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따른 철근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 4. 결 어

사례의 경우 철근업자 丙은 철근이 이미 신축건물에 부합되어 독립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건축주 甲에 대하여 철근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건축주 甲이 시공업자 乙과 철근업자 丙 간에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甲이 이를 몰랐더라도 주의하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철근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할 것입니다.

###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11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46,000	706,000	국제철스크랩가 하락으로 전월대비 5.4% 인하되었으며 수요감소 및 비수기를 맞아 추가 인하 가능성 많으며 수급 원활한 편임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D13mm	736,000	796,000		
		D16mm	731,000	691,000		
	고장력 철근	D10mm	751,000	711,000		
		D13mm	741,000	701,000		
		D16mm	736,000	696,000		
후판	SM490B	880,000	880,000	최근 조선제 물량 확대에 따라 건설제 생산감소로 수급에 애로 겪고 있음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50,000	820,000	국제철스크랩가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3.5% 인하되었으며 수급 원활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50,000	820,000			
	400X400X13X21mm	900,000	96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650	3,650	철도 파업으로 수급에 차질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구경북은 육로수송가능으로 타격 적을 듯함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49,700		0 단위: m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48,7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수급 원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전체적으로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음	0 단위: m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라왕)	각재	1.8~3.6X9~12X4.5	1,020	1,020	국제환경단체 별목지양 등 공급감소 요인으로 가격 인상 소지 있으나 수급 원활함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X3~3.6	1,180	1,180		

### 회원 현황

■ 회원수 : 170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1	60	15	3	1	170	△2
중 구	9	1		1		11	
동 구	11	8	2	1		22	
서 구	4	3			1	8	
남 구	10	4	1			15	
북 구	9	13	2			24	
수성구	25	21	2			48	
달서구	8	8		1		17	
달성군	15	2	8			25	

※ 등록말소1, 자진반납1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대원시브이	대구 달성군 회원읍 본리리 94-6	대구 동구 신천4동 316-6	751-2100
소재지	반석종합건설(주)	대구 수성구 상동 413-15	대구 수성구 상동 381-2	765-4366
소재지	(주)만연종합건설	대구 남구 봉덕동 694-143	대구 수성구 지산2동 1161-44	475-7772
대표자	보선건설(주)	전주호, 김상수	전주호, 전병대	656-3000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11.01~11.30)	3	4	7	-	14
누계 (2009.01.01~11.30)	22	111	88	2	223



#### ❁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회원사의 건설공사실적신고 업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습회를 개최하오니 시간 엄수하여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09. 12. 21(월) 15:00
- 장 소 : 신라뷔페 신관 3층 (신천동 신라웨딩 옆)
- 참석대상 : 건설공사 실적신고 담당자 (회원사당 1명)

#### ❁ 건설수첩(Diary) 및 건설카렌다 제작 배포

우리사회는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10년 건설수첩(Diary)」 및 건설카렌다를 제작·구입하여 배포하오니 12. 18(금)까지 사무처로 직접 나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장 동 정



#### ❁ 2009 회원사 대표 경영연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1. 5(목) 20:00 충주 경영연수원
- 하신일 : 연수 참가 회원사 대표 격려

#### ❁ 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1. 6(금) 17:00 호텔인터불고엑스코
- 하신일 : 신임회장 취임 축하

#### ❁ 2009 회원친목행사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1. 13(금) ~ 15(일) 일본 오사카, 교토
- 하신일 : 행사 주관 및 회원 친목 도모

#### ❁ 전국 시도회장 협의회 참석

- 기 간 : 2009. 11. 20(금) 제주도
- 하신일 : 건설업 현안사항 협의

#### ❁ 대구상의 2009 경제동향보고회 참석

- 기 간 : 2009. 11. 25(수) 상의 10층 대회의실
- 하신일 : 국가공기업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미분양해소 지원제도(양도세면제, 취득세 감면등) 연장시행 건의

####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초청 송년 만찬회 주재

- 기 간 : 2009. 11. 26(목) 산촌한정식
- 하신일 : 행사 주관 및 지역건설업계 지속 지원 건의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